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역곡동 300-4 2007년 4월 19일

제07-20호

## 최근 뉴질랜드 연금개혁과 시사점

배 희 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hybae@kiep.go.kr, Tel; 3460-1075)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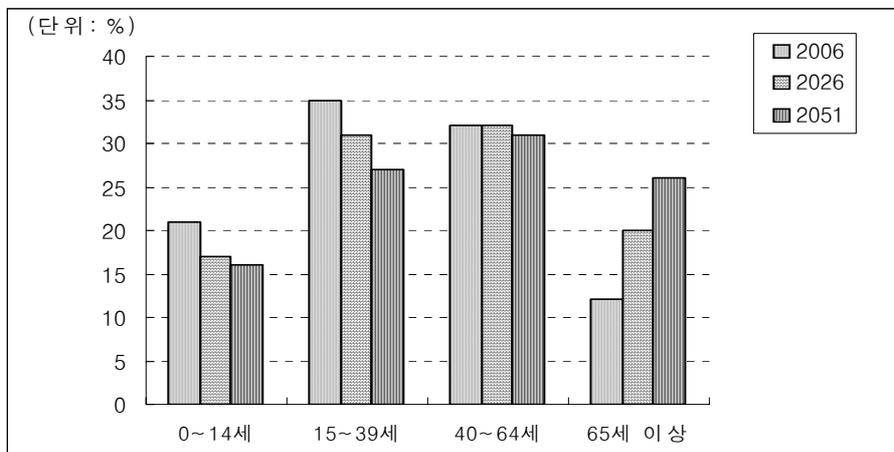
- ▣ 뉴질랜드는 심각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관련 부채 급증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향후 국가신용등급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내부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이에 뉴질랜드정부는 노령연금 급여 자격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개인 노령연금계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법률(KiwiSaver Act)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연금개혁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2007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KiwiSaver는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연금으로 현재 시행 중인 NZS와 달리 개인의 기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고령화 위험부담 일부를 가계부문으로 이전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연금제도의 보완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 KiwiSaver의 시행은 총저축의 증가와 함께 가계부문의 자산다각화 및 국내 금융시장 발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 한국은 고령화 진행속도나 노후대책으로서의 높은 부동산 선호도 및 연금관련 부채 급증 등 뉴질랜드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뉴질랜드의 연금개혁 조치를 참고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금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 고령화 관련 정책과제는 장기적이면서 동시에 구조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는 정부·민간·가계 부문간 최적의 위험배분율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 전략적인 고령화 관련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1.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연금개혁

### 가. 뉴질랜드의 인구구조 고령화 및 연금개혁

- 여타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심각한 인구구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음.
  - IMF의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실질 GDP는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0.08% 포인트 증가, 노인인구 1% 증가시 0.041% 포인트 감소함.
- 뉴질랜드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06년 현재 12% 수준에서 2026년경 전체 인구의 2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1 참고).
  - 뉴질랜드의 중간 연령(median age)은 1971년 26세에서 2004년 35세로 증가하였고, 2051년에는 46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뉴질랜드 인구구조 변화 전망



자료: NZIER(2006. 9), *Ageing and Economic Growth in New Zealand*.

-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1960년대 7.1명에서 2004년 현재 5.5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2028년경에는 3.0명, 2051년에는 2.2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 비록 뉴질랜드의 출산율이 OECD회원국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노동인구 고령화와 전체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05년 GDP의 11.8%로 집계되었던 뉴질랜드정부의 고령화 관련 지출규모는 2050년 20.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동 기간 무엇보다 연금으로 인한 지출<sup>1)</sup> 증가폭이 5.9% 포인트로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이 각각 2.3% 포인트와 1.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신용평가기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부재정 악화가 향후 국가신용등급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는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든 일본은 2020년, 한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는 2030년에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음.

표 1. 국별 장기신용등급 전망

구 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호 주	AAA	AAA	AA	BBB	-
캐나다	AAA	AAA	AAA	AAA	AA
프랑스	AAA	AAA	A	-	-
독 일	AAA	AAA	AAA	A	-
일 본	AA	A	-	-	-
한 국	A	AA	A	-	-
뉴질랜드	AA	AA	A	-	-
스웨덴	AAA	AAA	AAA	A	-
영 국	AAA	AAA	AAA	A	-
미 국	AAA	AAA	BBB	-	-

주: - 표시는 투자부적격 등급을 의미.  
 자료: Standard & Poor's(2006)

- 뉴질랜드정부는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과 관련된 부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연금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1977년부터 1992년까지는 60세 이상의 모든 뉴질랜드 주민에게 NZS를 지급하였으나, 1993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 NZS의 급여 자격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음.

1) 뉴질랜드 재무부의 전망에 따르면, 2006년 현재 GDP의 4.1% 수준인 연금지출이 2050년에는 GDP의 8.8%로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급증이 예상되는 연금 관련 재원의 부분적인 사전 조성을 위해 2001년 뉴질랜드 노령 연금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NZSF)을 설립하였음.
- 2001년 제정된 「New Zealand Superannuation Act」에 따르면, 뉴질랜드정부는 향후 40년간 NZS의 지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펀드에 전입해야 함.<sup>2)</sup>
  - 뉴질랜드정부는 NZS법에 따라 향후 40년간의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매년 의무 자본 전입 금액(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뉴질랜드 재무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37년이나 2038년경 NZSF 규모가 GDP의 36.2%로 최대치를 달성한 다음 감소하게 됨.
  - NZSF의 운용수익률은 8.65%, NZSF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은 29.0%로 가정하였음.

## 2. KiwiSaver의 주요내용

### 가. 도입배경

- 이러한 상황에서 뉴질랜드정부는 NZS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6년 9월 자발적인 형태의 개인 노령연금계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률(KiwiSaver Act)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KiwiSaver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저조한 가계저축률을 증대하고 가계부문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데에 있음.
  - 뉴질랜드의 총저축과 총투자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약 150억 뉴질랜드달러(NZD)의 총투자가 이뤄졌으나, 국내저축은 불과 1/3인 50억 NZD이며, 나머지 2/3는 해외저축으로 충당되고 있음.
  - 특히 가계부문의 경우 2005년 가처분소득은 747억 NZD이나 소비가 858억 NZD를 기록하여 무려 111억 NZD(가처분소득의 14.8%)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sup>2)</sup> 정부기여가 없을 경우 펀드에서 NZS를 지급할 수 있지만, 펀드로부터의 NZS 지급은 2020년 이후 가능함.

- 앞서 설명했듯이, 65세 이상의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이 NZS의 급여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은 노후(은퇴) 대비를 목적으로 한 저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음.
- OECD 조사에 따르면, NZS의 소득대체율(연금소득이 은퇴 전 평균소득을 대체하는 정도)은 뉴질랜드인 소득 평균의 무려 38%에 달하며, 이는 OECD평균인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특히 취업경력이 없는 뉴질랜드인도 저임금 근로자 소득의 70%를 상회하는 액수의 NZS를 수령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게는 별도의 노후대비 저축을 할 유인이 없음.
- 그 결과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약 29.6%만이 뉴질랜드의 민간연금저축 프로그램<sup>3)</sup>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금의 자산규모가 GDP의 11.3%에 불과함.
- 게다가 다른 OECD 국가들이 민간연금저축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다른 금융상품(저축)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음.
- 한편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현재 무려 75.7%(GDP 대비 329%)에 이를 만큼 가계부문은 비정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형태<sup>4)</sup>를 가지고 있음.

**표 2. 뉴질랜드 가계부문의 자산보유 형태**

(단위: 십억 NZD)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부동산	73	126	183	232	506
금융자산	47	72	102	126	162
가계자산 합계	120	198	285	358	668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60.8	63.6	64.2	64.8	75.7

자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Statistics Database

- 이와 같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로는 뉴질랜드인의 부동산에 대한 높은 선호와 함께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부동산 조세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음.

3)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등록 민간 연금저축 프로그램은 크게 3종류로 39개의 가족연금(친족이 가입한 연금), 431개의 회사연금(회사 자체 운용) 및 120개의 소매연금(금융권의 연금저축 프로그램)이 있음.

4) 통계청이 발표(2007. 3. 7)한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8%로 매우 높은 수준임. 특히,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5.2%에 달하여, 노후대비가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일본의 61.7%, 캐나다의 50.0%, 미국의 36.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주택 소유는 그 자체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은퇴 이후 소유주택의 임대 또는 매각(역모기지를 포함)을 통해 추가로 소득을 마련할 수 있음.
- 한편 뉴질랜드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주택의 보유·거래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모든 소득원천에 대한 주택 관련 금융비용(모기지 이자)이나 수선·유지 관련 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등 다른 연금저축 등의 금융자산 보유를 기피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체 가계(가구)의 15% 가량이 하나 이상의 비거주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가구의 8% 가량만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 나. KiwiSaver의 구조

-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KiwiSaver는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연금으로 임금의 4% 또는 8%를 원천 징수(공제)하여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금융자산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한 후, NZS의 급여대상자가 되는 65세 이후에 그 투자수익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임.
- KiwiSaver 가입은 강제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최초 취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KiwiSaver에 편입되지만, 최초 취업일로부터 2주 이후 8주의 기간내에 KiwiSaver를 탈퇴할 수 있음 (KiwiSaver Act 제16조).
- 다만 최초 취업자라 하더라도 농업종사자 및 임시직(계약기간 28일 이하)의 경우는 자동 편입 대상이 아님(KiwiSaver Act 제12조).
-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KiwiSaver의 강제화를 통해 호주처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자는 주장도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필요 이상의 저축을 강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낮추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
- KiwiSaver는 다른 민간연금저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부규제를 받는 정부에 등록된 민간사업자에 의해 관리되지만, KiwiSaver의 투자수익에 대한 정부보증이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임.
- 가입자는 각각 다른 자산(위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6개의 적격사업자<sup>5)</sup>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여 기간 동안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음.

<sup>5)</sup> ASB Group Investments Limited, AMP Services (NZ) Limited, ING (NZ) Limited,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Limited, National Mutual Corporate Superannuation Services Limited(trading as AXA NZ), TOWER Employee Benefits Limited.

- 가입자는 최초 기여분 납부를 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납부중지(Contribution Holidays)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년 동안 납부 중지가 가능함.
- 또한 가입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대출금(모기지) 상환에 KiwiSaver 계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최초 가입시 조건으로 선택해야 하며, 피용자 기여분의 절반까지 사용가능하나 고용자 기여분은 사용할 수 없음.
  - 게다가 가입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구입을 위해 최초 납부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KiwiSaver 계좌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KiwiSaver와 같은 연금저축 프로그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의해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첫째, 최초 취업자는 자동적으로 KiwiSaver에 편입되지만, 탈퇴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강제가입 구조로 되어 있는 호주·스웨덴 등의 프로그램과 다르며,
  - 둘째,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구조이고,
  - 셋째, 납부중지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임.

**표 3. OECD 국가의 공적 연금저축 프로그램**

구 분	시 작	대 상	기 여	가입자	급 여
호주 (Superannuation Guarantee)	1992년	모든 피용자 및 자영업자	고용자 기여 강제 총급여의 9%	9백만 (2005년)	60세 이후 일괄 또는 연금 지급 (혼합방식 가능)
영국 (National Pensions Savings Scheme)	2010년	21세 이상 피용자	자동가입 (탈퇴 가능) 고용자기여 강제 피용자 5% 고용자 3%	7백만 (목표)	연금방식 또는 55~75세 기간 균등 지급

자료: Pensions Policy Institute(2006), *NPSS Policy and Design Choices*.

### 3. KiwiSaver의 기대효과

- 뉴질랜드정부는 다른 연금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KiwiSaver도 근로의욕과 저축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불어 뉴질랜드의 금융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 가계자산의 구성 비중 변화 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저축률의 증가

- 매력적인 연금저축 프로그램의 도입은 총저축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금융교육을 통해서도 저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
- 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NZS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저축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고,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어 KiwiSaver의 도입으로 저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다만 KiwiSaver의 최초 취업자 자동편입 방식은 총저축을 일정 수준 상승시킬 것으로 보임.

- 근로유인의 증가

- KiwiSaver는 확정기여형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연금급여가 상승하므로, 근로의욕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음.
- NZS의 경우 급여액이 취업기간과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유인이 되며,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낮은 여가비용으로 인해 조기 은퇴할 유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높은 여가비용으로 인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임.
- 뉴질랜드의 경우 은퇴 후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

- 자산 다각화

- KiwiSaver는 소득의 일정부분(4% 또는 8%)을 연금저축형태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을 증가시켜 가계의 자산 다각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많은 노인인구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KiwiSaver의 주택구입 지원 관련 규정은 KiwiSaver의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부문의 자산다각화(금융자산 보유비중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국내금융시장 발전

- KiwiSaver의 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자금이 금융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만성적으로 외국자본 조달에 의존해온 뉴질랜드의 금융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는 뉴질랜드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금융자원의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연금펀드의 운용이 장기간 국내에 국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 4. 결론 및 시사점

### 가. 한국과 뉴질랜드의 유사성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이 다가오면서 인구 고령화가 금융시장 및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연금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연금지급과 의료비용 등 고령화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음.
- 고령화는 OECD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이자 도전과제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경우 현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비율 7~14%)에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로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음.

- 양국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모두 2026년경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05년 기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76.8%, 뉴질랜드가 75.7%로 양국 모두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선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노후대비 목적 자산을 주택 등의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아울러 양국은 민간연금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2005년 기준 GDP대비 민간연금기금 규모가 한국 1.9%, 뉴질랜드 11.3%로 OECD 평균인 87.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sup>6)</sup>
- 양국 모두 미적립 연금부채의 급증으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위험<sup>7)</sup>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강한 선호와 최근의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을 경험하였음.
- 고령화 대책은 각국의 고령화 진행속도, 사회보장제도 구성 및 금융환경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나,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 속도와 노후대책으로서의 높은 부동산 선호도가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연금개혁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나. 시사점

- 영국, 호주 등의 국가처럼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로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유지해오던 뉴질랜드도 고령화 관련 위험부담을 점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에서 민간 및 개인의 재량으로 이양하는 시장지향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추세에 부응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전환이자 현실적인 접근방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제도가 확대된 지난 19년간 보험료를 조정은 두 차례, 급여율 조정은 한 차례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실패하였음.

6)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006. 10. 31)에 따르면, 정부기금을 포함하더라도 한국과 뉴질랜드의 GDP 대비 연금자산 규모는 각각 19.5%와 15.5%에 지나지 않음.

7)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급여율 60%' 구조 유지시, 2036년 수지적자 발생 후 2047년 국민연금기금 소진 우려가 있음.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연금수급자와 부담자간 불균형으로 인해 제도의 존속 자체가 회의적인 상황에서 지난 4월 2일 ‘고부담, 저급여’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개혁안<sup>8)</sup>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진행속도나 장기 국가신용등급 전망 등 여러 유사성을 띠고 있는 뉴질랜드의 연금개혁 조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NZS와 민간연금 및 새롭게 도입되는 ‘KiwiSaver’로 구성되는 뉴질랜드의 연금체계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제<sup>9)</sup>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sup>10)</sup>, 연금수급 자격연령이 65세 이상인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다르게 60세라는 점, 연금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서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과 함께 KiwiSaver와 같은 퇴직연금제의 확산과 미세적인 제도 조정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는 뉴질랜드의 KiwiSaver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가입이 가능한 구조 이기에 2007년 2월 현재 가입자가 23만 명(전체 상시근로자는 1,352만) 수준에 불과해 제도 확산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제도이지만,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등을 이유로 퇴직연금의 1/2까지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수급연령이 55세(KiwiSaver는 65세)로 낮다는 점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sup>11)</sup>
  - 아울러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대해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노후대비 금융교육을 전체 국민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8) 부결된 정부안은 보험료율 12.9%(2018년까지 매년 0.39% 포인트씩 인상), 급여율 50%(2008년 이후 10% 포인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9) 퇴직연금제도로만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에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음.

10)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 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11)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만 60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가 지급기준 연령이 됨.

-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을 1년이라도 미룰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며, 부동산 구입을 통한 노후대비가 장래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금융교육 등을 통해 다른 저축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함.
- 고령화 관련 정책과제는 장기적이면서 동시에 구조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는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로 종합적·전략적인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고령화 관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유인을 개발하고 가계가 고령화 위험을 적절히 관리·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가계 부문간 최적의 위험배분율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연금제도 개혁의 성패는 금융시장의 발전 및 육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30년 이상 만기의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금융상품의 공급을 적극 장려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